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611호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환경위원회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기획평가과), 02-970-6077

제정 2012. 3. 1. 일부개정 2021. 5. 1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환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기능) 캠퍼스환경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캠퍼스마스터플랜(Campus Master Plan)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2. 학교 시설 및 환경과 관련한 기본계획의 검토
- 3.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20명 이내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총장으로 한다.
-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- ④ 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각 단과대학

학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사무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

-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, 기획처 기획평가팀장으로 한다.
- ⑥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5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자료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.
- 제6조(소위원회)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 원회를 둘 수 있다.
- 제7조(자료제출 및 협조)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와 의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8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장·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·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9조(운영세칙) 이 규정으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(제42호, 2012. 3. 1)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611호, 2021. 5. 18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